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 요건으로서 기사 내용의 진실성 인정 범위**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부적 내용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 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컨설팅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유치를 하고, 투자자로 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머니위크(머니앤밸류 발행)와 머니투데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기사를 통해 원고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찾지 못할 위험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며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및 기사 게재금지청구도 “게재된 기사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다룬 사실관계에 대해 “기사 일부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

가 있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컨설팅은 자신의 회사와 자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두 언론사가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나’, ‘○○컨설팅의 위험한 머니게임’ 등의 제목으로 “갑사를 진행한 회계법인도 기업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등 자사를 비판한 내용을 보도하자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기사 게재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2009. 7. 8.자 선고(2008가합104388)

사 건 : 2008가합104388 정정보도등

원 고 : ○○컨설팅 주식회사

피 고 : 1. 주식회사 머니앤밸류

2.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변 론 종 결 : 2009. 6. 17.

판 결 선 고 : 2009. 7. 8.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머니앤밸류는 이 판결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머니위크의 피쳐면에 [별지1] 기재 각 정정보도요구문을 게재하고,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는 이 판결송달 당일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2]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1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3]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2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5]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3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별지6] 기재 기사 하단에 [별지1] 제4항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각 게재하되, 각 정정보도요구문의 제목은 판결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해당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게재하라. 만일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기한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내지 [별지6] 기재 각 기사 게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원고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취지 기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한 기사 1건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1990. 5. 29. 토지개간, 개발 및 그 대행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머니앤밸류(이하 '피고 머니앤밸류'라고 한다)는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간지인 '머니위크'를 발행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피고 머니투데이'라고 한다)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일간지인 '머니투데이'를 발행하고 있다.

나. 제1기사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9. 16.자 머니투데이에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나』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의문의 부동산개발 사업」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원고가 개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보통 3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잡고 이 기간 동안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고, 투자 원금을 되돌려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원고는 각 사업지별로 별도의 관계사를 설립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간 돈은 극히 미미하다. 원고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끌어온 449억여 원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353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없다.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무려 602억여 원이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원고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서도 기업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머니앤밸류는 2008. 9. 16.자 머니위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1기사' 라고 한다).

### 다. 제2기사

피고 머니앤밸류는 머니위크에,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9. 25.자 머니투데이에 『○○컨설팅의 '위험한 머니게임'』이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자금유치 불법 '유사수신행위' 논란」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들어 대출 형식이기 때문에 수신(예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과 연 20%의 이자율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모집 방식이라며 원고의 투자금 모집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약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출을 받은 것이

기 때문에 원금보장이나 수익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은행 J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원금보장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안 갚겠다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원고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이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개발사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계약의 경우 사업기한을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잡고 사업이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연 10%의 지연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표이사 등은 2002년경 유사수신행위로 구속수사를 받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기왕에 넣은 투자금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2기사' 라고 한다).

### 라. 제3기사

피고 머니앤밸류는 2008. 9. 30.자 머니위크에 『○○컨설팅의 겁나는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고는 3.3㎡당 1~2만 원짜리 땅을 매입하면서 개발비용을 명분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그 많은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파악되지 않았다.

수천억 원대의 돈이 말이다. 원고의 재무제표에는 투자금과 회사운용계정의 구분이 없다.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되찾으려면 먼저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같은 배를 타게 된다. 기자는 이 회사가 ‘모두가 망하는 게임’으로 결국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는 취지의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10. 1.자 머니투데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

마. 제4기사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10. 7.자 머니투데이에 『비밀의 공간서 ‘그들만의 돈잔치’』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기가 막힌 판매수수료’」라는 작은 제목 아래 <원고가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이는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 가운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 21세기○○주식회사, 주식회사 관광개발○○ 등 특수관계회사들의 명의로도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는데, 원고를 비롯한 이들 외부감사대상법인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들이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183억여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위 4개사가 끌어 모은 투자금 순증가액의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21세기○○주식회사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의 투자금 순증가액이 169억 2,352만여 원인데,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74억 6,707만 원으로 투자금 순증가액과 단순비교하면 판매수수료 비중이 44.1%나 된다.

주식회사 관광개발○○의 경우에도 2007년 한 해 동안 투자금이 15억 8,325만 원 순증가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7억 3,728만 원으로 순증가액과 단순비교하면 46.57%나 되는 돈이다.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투자유치를 해 늘어난 투자금의 절반이 수수료로 지급됐다고 할 수 있다. 원고 회사의 장○○ 팀장은 “투자금 사용내역을 보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가, 실제로 본지가 자료제공을 요청하자 말을 바꾸어 이를 자기 마음대로 내줄 수는 없다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머니앤벨류는 2008. 10. 14.자 머니위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4기사’라고 한다).

바. 제5기사

피고 머니투데이는 2008. 10. 14.자 머니투데이에 『수백억 끌어 들여 단돈 몇 억 없어 공사 중단?』이라는 큰 제목과 「○○컨설팅 ‘이상한 자금운용’」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강원 ○○군 ○○읍 ○○리 소재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건설이 지난 2006년 공사대금으로 22억 8,21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19억 9,749만 원만 지급하였고, 2007년 청구액 17억 6,460만 원 중 13억 3,608만 원만 지급되었다. ○○건설 관계자는 “건설 진척에 따른 기성액을 원고가 맞춰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되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원고가 시공사인 ○○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별지6] 기재 기사를 게재

하였고, 피고 머니앤벨류는 2008. 10. 21.자 머니 워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제1기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투자약정상 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용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업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으며,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이 602억여 원이나 되는 것은 업종의 특성상 개발사업 완료 시에 이익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되기 때문이지 이로써 기업 존속에 의문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제2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투자금 유치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님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반론은 전혀 신지도 아니한 채 일부 금융계 인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부각시키거나 과거 다른 사례와 결부시킨 잘못된 기사이며, ③ 제3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미 공개된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자료나 객관적인 세무조사자료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확인도 없이 취재기자의 주관 내지 독단적인 견지에서 막연히 추측한 기사에 불과하고, ④ 제4기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히 투자금의 대부분이 판매수수료로 빠져나갔다가, 원고 회사의 장○○ 팀장은 피고들에

게 자금사용내역을 제공하겠다고 한 바도 없음에도 사실과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기사이고, ⑤ 제5기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의 공사대금으로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선금금 6억 731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7,231만 원으로 ○○건설이 청구한 35억 3,100만 원보다 많아 오히려 초과지급되었고, 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가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건설이 완공예정일인 2007.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을 방치하다가, 2008. 4.경 원고와 사이에 타절정산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판 단

가. 기사의 진실성 여부와 정정보도청구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원고는 그 자체 이름으로나 또는 21세기○○주식회사 등의 자회사 이름으로 강원 ○○, ○○, ○○ 및 ○○, 경북 ○○ 및 ○○, 제주 ○○ 및 ○○ 등 전국적으로 10곳에서 부동산개발을 추진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현재까

지 공사에 착수한 곳은 강원 ○○의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지와 ○○의 ○○온천 개발사업지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는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만 한 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8곳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부분 개발에 필요한 허가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이다.

(㉑)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대표이사 양○○)이 강원 ○○군 ○○읍 ○○리 일대 토지 1,421,494㎡에서 추진 중인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00. 5. 31. 위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도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19.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 같은 달 25.부터 시공사를 ○○○○ 주식회사로 하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중간에 시공사가 위 회사의 하수급체인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고, 그 후 1차 부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㉒) ○○매니지먼트 주식회사(대표이사 양○○)가 ○○시 ○○면 ○○리 일대 토지 120,810㎡에서 추진 중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호텔, 콘도, 모텔, 상가,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등)의 경우 1995. 7. 13. 온천지구 지정 후 1999. 10. 27. 관광지 지정이 있었고, 2000. 6. 20.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온천(대표이사 양○○)으로,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로 정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사업시행에 필요한 소유권 내지 동의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㉓) 원고가 경북 ○○군 ○○면 ○○리 일대 토지 473,000㎡에서 추진 중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996. 12. 27.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설립되어 사업기간을 1997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07년에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하는 등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의 결과 요구된 사항을 보완 중이다.

(㉔) 21세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양○○)가 강원 ○○군 ○○면 ○○리 일대 토지 568,001㎡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콘도 150실 및 골프장 9홀)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2007. 8. 22. 처음 ○○군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이래, 2007. 12. 14.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조건부 입안결정, 2008. 5. 28. 도의 제안서 사전검토 등을 거쳐 2009. 2. 3. 보완 제출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2회에 걸친 서면에 의한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완 제안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㉕) 주식회사 관광개발○○(대표이사 양○○)이 제주 ○○군 ○○읍 ○○리 일대 토지 1,126,662㎡에서 추진 중인 ○○파크 조성사업(호텔 770실, 콘도 1,300실 등의 숙박시설, 상가, 워터파크 등 운동·오락시설, 영화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의 경우에는 2004. 7. 31. 사업예정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 12. 경 2종 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현장여건과 사업계획의 불합리로 반려되었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승인 기한이 2007. 7. 30.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기한 내에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b) 원고가 제주 ○○시 ○○동 일대 토지 1,092,600㎡에서 추진 중인 ○○온천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8. 12. 15.자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요사업비 납부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이 있었다.

(c)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관계관청에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 등이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d) 투자자와의 계약 내용 및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1) 원고는 강원 ○○○○타운 개발사업, ○○○○리조트 개발사업,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경북 ○○온천지구 개발사업, 울진 평해 및 후포 일대 부동산개발사업, 제주 ○○포 ○○동 부동산개발사업, ○○군 ○○부동산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 유치 시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 또는 ‘부동산투자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 양식(갑 제21호증의 1 내지 8)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고, 사업기간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3년으로 정하여 원고는 그 기간 내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의 30% 또는 투자면적 대비 10% 범위 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하여 정산하고(○○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과 ○○온

천지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년이 고, 환지대상도 투자면적 대비 10%로 되어 있다), 행정질차 등으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때에는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환지 시 일괄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투자금을 환지로 정산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원고는 ○○ 일대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제2호증의 6)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자 연 20%,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권리 보전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1,000평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되, 투자자는 당해 채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박○○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4397호로 강원 ○○군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2006. 6. 29.자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약정된 2년 이내에 투자금 및 개발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위 사건은 2008. 11. 13. 원고가 박○○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 및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십 건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

고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소송 외에서의 합의로 소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 및 자회사들의 재무현황

(㉑) 원고 회사는 제주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24,004,456,464원인 반면 부채는 82,624,907,370원으로 60,292,987,322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31,494,472,787원인 반면 부채는 97,333,573,243원으로 66,835,149,696원 결손 상태로 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5 사업연도의 경우 6,250,000원, 2006 사업연도의 경우 3,430,990,051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3,197,277,833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798,481,043원 합계 11,432,998,927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44,947,970,459원이다.

(㉒) 21세기○○ 주식회사는 강원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44,376,496,430원인 반면 부채는 89,641,479,895원으로 45,802,932,319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46,195,915,269원인 반면, 부채는 98,786,027,328원으로 53,140,112,059원 결손 상태이다. 위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6,195,686,80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467,073,765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369,409,103원 합계 18,032,169,672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60,978,200,705원이다.

(㉓) 주식회사 관광개발○○은 제주 ○○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25,265,451,396원인 반면 부채는 42,241,638,030원으로 18,496,335,549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24,370,152,571원인 반면 부채는 42,410,043,569원으로 19,539,890,998원 결손 상태이다. 위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767,740,177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37,280,746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181,647,809원 등 합계 1,686,668,732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42,092,751,848원이다.

(㉔)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은 강원 ○○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7. 12. 31. 현재 자산은 21,162,049,649원인 반면 부채는 70,065,574,082원으로 50,097,981,012원 결손 상태이고, 2008. 12. 31. 현재 자산은 40,302,471,131원인 반면 부채는 68,737,803,071원으로 29,635,331,940원 결손 상태이다. 위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11,130,124,52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6,900,306,638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884,327,822원 합계 18,914,758,984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회사의 2007년 말 현재 투자유치금은 67,089,119,121원이다.

(라) 원고의 최근 영업 등의 현황

원고 회사 및 자회사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지연

으로 약정된 기한 내에 투자금을 환지로 청산하지 못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1.부터 경기 후퇴로 영업실적이 전월 대비 25~30%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 4월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50% 이하로 큰 폭으로 떨어져 2007년도에 70,393,000,000원에 이르던 총 매출액(투자금)이 2008년도에는 34,513,000,000원으로 급락하였다(이 사건 보도 이후로는 이 사건 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로 찾아와 항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2008. 3.부터 ‘에이전트’라는 영업직원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하여 같은 해 5월과 6월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정근거] 갑 제18,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6 내지 8, 10, 17 내지 22, 24 내지 2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 ○○시장, ○○군수, ○○군수, ○○군수, 경상북도 ○○군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 (3) 판단

#### (가) 이 사건 기사들의 전체적 취지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2~3년의 투자기간 경과 후 개발된 사업용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말 현재 투자금은 원고의 경우 44,947,970,459원, 21세기○○ 주식회사의 경우 60,978,200,705원, 주식회사 관광개발○○의 경우 42,092,751,848원,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의 경우 67,089,119,121원으로 합계

215,108,042,133원(연도별로는 대략 2005년도 64,715,000,000원, 2006년도 65,537,000,000원, 2007년도 70,393,000,000원)이고, 여기에 2008년도 투자금 34,513,000,000원을 합하면 총 투자금이 2,496억여 원에 달한다. 그 중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투자기간이 종료한 투자금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 되고, 투자기간을 3년으로 보더라도 2011년까지는 2,496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과 관련하여 개발된 사업용지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들 중 현재 공사에 착수한 곳은 강원 ○○의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과 ○○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두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자의 경우에는 2007년 말경에 공사가 중단된 이래 일체 진척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착공을 하였다고는 하나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최소한도 사용동의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등 중간적인 처분을 받았다가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실효되었거나, 사업기간 자체가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 등 3년이라는 투자기간 내에 최소한도 사업용지 개발만이라도 마치고 환지로써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원고는 2009. 2. 14. ‘2009 위기극복 활성화 촉진대회’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재의 경영 위기가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여파로 인한 매출 급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자체 진단 아래 투자자

들 중에서 사업지 별로 대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전체 사업지를 총괄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종전과 같이 한 해에 6~7백억여 원에 달하던 신규 투자가 2008년 들어 약 절반으로 줄어든데다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힘든 관계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2~3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후에 환지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대표들로 하여금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도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장차 투자기간 경과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회사 청산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비상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찾지 못할 위험에 대하여 경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진실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기사별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나) 제1기사

(1) 원고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개는 2~3년의 사업기간 내에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개발된 토지를 환지하여 투자금을 정산하는 조건을 취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고, 전자의 경우에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사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환지 시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2~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업

을 마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는 투자를 유치할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된 토지를 환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환지 이외에 추가로 매년 10%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1기사 중 ‘원고가 사업기간 동안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부분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회사의 경우 2008. 12. 31. 현재 자산이 31,494,472,787원인 반면 부채는 97,333,573,243원으로 66,835,149,696원 결손 상태이고, 21세기○○주식회사의 경우 2007. 12. 31. 현재 자산이 44,376,496,430원인 반면 부채는 89,641,479,895원으로 45,802,932,319원 결손 상태인데, 이들 회사들의 목적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비용만 지출될 뿐 이익이 실현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의 2~3배 규모나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2호중의 24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도 원고 회사 및 주요 자회사인 21세기○○주식회사, 주식회사 관광개발○○,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 등에 대한 감사결과 수백억 원 상당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된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거액의 결손금을 이유로 기업 존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기사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사실에 입각한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다.

### (다) 제2기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제1호),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제2호),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3호),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약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을 제2호중의 18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 양○○은 2001. 5.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부동산개발 투자금으로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에 연 25%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3년 경과 시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금 대비 연 10%를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총 198명으로부터 합계 54억여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02.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연 10%의 지연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점을 들어 원고의 투자금 모집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법적인 판단 내지 평가에 불과하다.

### (라) 제3, 4기사

원고가 부동산컨설팅에이전트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유치사업 업무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영업부 관리규정(갑 제20호증)에 의하면 투자 목적의 입금을 실적금액으로 하여 실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12%, 부서장 3%, 지사장 3%로,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에 잔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 10%, 부서장 2%, 지사장 2%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총 입금실적에 따라 0.5% 내지 2% 또는 5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제주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44,947,970,459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 수수료로 지출한 돈이 2005 사업연도의 경우 6,250,000원, 2006 사업연도의 경우

3,430,990,051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3,197,277,833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798,481,043원 합계 11,432,998,927원에 달한다. 21세기○○ 주식회사는 강원 ○○, ○○ 및 경북 ○○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60,978,200,705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돈이 2006 사업연도의 경우 6,195,686,80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467,073,765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4,369,409,103원 합계 18,032,169,672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관광개발○○은 제주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42,092,751,848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돈은 2006 사업연도의 경우 767,740,177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737,280,746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181,647,809원 등 합계 1,686,668,732원에 달한다.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은 강원 ○○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말 현재 총 67,089,119,121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돈은 2006 사업연도의 경우 11,130,124,524원, 2007 사업연도의 경우 6,900,306,638원, 2008 사업연도의 경우 884,327,822원 합계 18,914,758,984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원고 회사와 자회사들을 합하여 투자금 유치실적이 2005년 64,715,000,000원, 2006년 65,537,000,000원, 2007년 70,393,000,000원, 2008년 34,513,000,000원이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자회사들을 포함하여 그 동안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돈이 총 50,066,596,315원으로 총 투자유치금 235,158,000,000원의 21.29% 상당에 이르는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1/5 이상의

돈이 투자와 동시에 원고 및 그 자회사들의 영업 관련자들에게 비용조로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신규 투자액 65,537,000,000원 중 약 32.84%에 상당한 21,524,541,556원의 판매수수료가 지출되었고, 2007년에는 신규 투자액 70,393,000,000원 중 25.99%에 상당한 18,301,938,982원이 지출된 셈이다. 나아가, 개별회사별로 2007년에 투자금 순증가액과 단순 비교할 경우 판매수수료가 44.1% 내지 46.57% 상당액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 이전에 피고 머니앤밸류의 머니위크에 보도되었던 ‘○○컨설팅, 의문의 부동산개발사업,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를 대리한 장○○ 팀장이 위 피고에게 투자금의 사용내역이나 근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금 가운데 판매수수료로 빠져나간 돈이 과도하다는 등으로 투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제3, 4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마) 제5기사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 ○○군 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종합레저타운이 강원 ○○군 ○○읍 ○○리 일대 토지 1,421,494㎡에서 추진 중인 ○○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00. 5. 31. 위 회사가 사업시

행자로 선정되어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 3. 19.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 같은 달 25.부터 시공사를 ○○○○ 주식회사로 하여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중간에 시공사가 위 회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7년 말경 1차 부지조성공사의 공정률이 8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된 ○○건설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락시설지구단지 조성과 관련한 2006년도 청구액은 2,282,100,000원, 지급액은 1,997,498,000원, 2007년도 청구액은 1,764,602,000원, 지급액은 1,336,082,000원으로 제5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에 기성고보다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고, 2008. 4.경 위 회사와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하고도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때까지 약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에 부합한다.

####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가 높은 수익을 제시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 모으고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중 상당 부분을 챙기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내역도 불분명한데다가, 정작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크고, 또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 (2) 위법성 조각 여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이 사건 기사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투자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여 많은 투자를 받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회사의 이익만 챙기고 결국 관련 사업은 중단되어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일부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객

관적인 사실에 배치되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들은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기사게재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기사들과 같이 원고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취지 기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나, 설령 이 사건 기사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

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투자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성도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건 기사들과 같은 내용의 보도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6] 각 생략 - 편집자 주

